주식회사 탄천환경

수신 서울특별시장

(물재생시설과장)

제목 법률 자문 및 지원요청(부정당업자제재 처분)

1. 서울특별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탄천물재생시설 관리·운영 위·수탁 협약서 제6조⑦항에 따라 지방계약법을 준용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
3.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 등이 있을 경우 **민간위탁사(발주기관)가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가능 여부**에 대해 법률 자문 및 지원을 요청드립니다.

붙임 : 법률 자문의뢰 주요내용 1부. 끝.

주식회사 탄천환경 대표이사 오세영

담당 이정훈 **과장** 장영애 **부장** 현순혜 **실장** 이재남

문서번호 탄천 제2018-374호 **시행일** 2018-07-02

주소 06333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5

전화 02-3410-9783 **팩스** 02-3410-9729 **이메일** abc741115@naver.com

법률 자문의뢰 주요내용

● 개 요

- 탄천물재생시설 관리·운영 위·수탁 협약서(제6조⑦항)에 따라 지계법을 준용하여 시설물 수선유지보수 등의 사업 시행

탄천물재생시설 관리·운영 위·수탁 협약서 제6조⑦항

"탄천환경"은 "시"로부터 지급받은 위탁관리비를 본 사업목적을 위한 용도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, **시설비 등 정산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집행**하여야 한다.

- 국가정보조달시스템(G2B)을 통해 기타기관(위탁대행)으로 등록되어 자체발주 및 계약집행

● 자문요지

1.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지계법 제31조 및 동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민간위탁사가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가능 여부 ?

부정당업자제재 처분 근거 법령

- 국가기관(국가계약법)
- 지방자치단체(지방계약법)
- 공공기관(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)
- 지방공기업(지방공기업법)
- 출자·출연기관(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)

2. 민간위탁사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조치가 불가할 경우 구속력이 있는 조치 방안 ?

3. 근거 없이 강제적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시 불복 소송(행정 또는 민사)등 발생 여부 ?